친생자관계존재확인과 인지청구 관계법령

[민법] 제844조(남편의 친생자의 추정)

법률 제21454호 · 2026. 3. 17. 시행

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.

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.

③ 혼인이 해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민법] 제863조(인지청구의 소)

법률 제21454호 · 2026. 3. 17. 시행

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민법] 제864조(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)

법률 제21454호 · 2026. 3. 17. 시행

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민법] 제865조(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)

법률 제21454호 · 2026. 3. 17. 시행

① 제845조, 제846조, 제848조, 제850조, 제851조,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